

파주 운정3지구 A-29블록 중흥S-클래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9블록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17개동, 총 1,262세대(이주자주택 포함)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123세대(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주택형	타입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배정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59.3275A	59A	484	59.3275	19.7393	79.0668	48	
59.9064B	59B	38	59.9064	20.5079	80.4143	3	
84.1597A	84A	556	84.1597	26.8788	111.0385	55	
84.5609B	84B	90	84.5609	29.6361	114.197	8	
84.5095C	84C	94	84.5095	27.4957	112.0052	9	
소계		1,262				123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파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내역

(단위:세대)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예비)					
		59A	59B	84A	84B	84C	계
장애인	서울시청	4(2)	-	6(3)	1(1)	1(1)	12(7)
	인천광역시청	3(2)	-	4(2)	-	1(-)	8(4)
	경기도청	7(3)	1(1)	7(3)	1(1)	1(1)	17(9)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5(2)	-	6(2)	1(1)	1(1)	13(6)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5(2)	-	5(2)	1(1)	1(-)	12(5)
장기복무 제대 군인		5(2)	1(-)	6(2)	1(1)	1(-)	14(5)
중소기업근로자(중소기업청)		9(4)	1(1)	11(4)	1(1)	1(1)	23(11)
철거민		5(2)	-	5(2)	1(-)	1(-)	12(4)
북한이탈주민		5(2)	-	5(2)	1(-)	1(-)	12(4)
소 계		48(21)	3(2)	55(22)	8(6)	9(4)	123(55)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일정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9.06.14(금)	일간신문 및 파주운정3지구 중흥S-클래스 홈페이지 (http://paju-sclass.com)
• 견본주택 개관	2019.06.14(금)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번지,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 특별공급 접수	2019.06.19(수)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19.06.27(목)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APT2you 앱 개별조회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6.14.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자격 요건(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흥부부 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 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 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시 자격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 06. 14(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태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건본주택 (<http://paju-sclass.com>)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 06. 14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